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리인하 요구권의 분기별 고지 의무화〉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59호)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61호)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63호)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66호)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67호)

2025. 7.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
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
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
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
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
III . 검토의견: 금리인하 요구권의 분기별 고지 의무화	7

I. 제안경위

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2025. 3. 5.

다. 회 부 일: 2025. 3. 6.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2025. 3. 5.

다. 회 부 일: 2025. 3. 6.

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2025. 3. 5.

다. 회 부 일: 2025. 3. 6.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2025. 3. 5.

다. 회 부 일: 2025. 3. 6.

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2025. 3. 5.

다. 회 부 일: 2025.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

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6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은행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대출·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해당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6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2항).

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6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은행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6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3제2항).

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6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13제2항).

Ⅲ. 검토의견: 금리인하 요구권의 분기별 고지 의무화

-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신규 차주) 뿐 아니라 이미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기존 차주)에게도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u>알려야</u> 한다.	② ----- ---- <u>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u> ----- ----- <u>매 분기마다 알려야</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생략)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u>알려야</u> 한다.	② ----- ----- <u>자 및 대출등의 계약 체결에 따라 대출등을 받고 있는 자</u> ----- ----- <u>매 분기마다 알려야</u> -----.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생략) ②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매 분기마다 알려야---.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생략)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매 분기마다 알려야---.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 ① (생략)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매 분기마다 알려야----.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¹⁾로,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각 금융기관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²⁾에 근거를 두고 있음³⁾.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각 금융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알려야 함⁴⁾.

○ 금리인하 요구권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금리인하 요구 신청 건수는 389만 8,367건으로, 이 중 33.8%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었음. 지난 5년간 금리인하 요구 신청 건수는 약 4배 증가하였으며,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2020년 약 40%를 기록한 이후 다소 낮아짐.

1)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2) 「은행법」 제30조의2,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보험업법」 제110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3) 2018년 12월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2022년 1월 상호금융회사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함.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전업권 기준 금리인하 요구 신청 건수 및 수용률 추이 >

(단위: 건)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청건수	965,633	1,162,632	2,519,275	3,710,016	3,898,367
수용률	40.1%	34.2%	31.5%	34.6%	33.8%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각 법률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신규 차주)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⁵⁾. 또한,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도록 하고⁶⁾,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현황 및 실적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⁷⁾.
-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신규 차주 뿐 아니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존 차주에게도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신용상태 개선에 따른 금리 인하 혜택의 기회를 기존 차주에게 확대하려는 취지임.

5) 「은행법」

제69조(과태료)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④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2.>

7) 금융감독원세척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 공시항목은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이며, 공시내용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 인하금리 등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1년 11월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차주 뿐 아니라 기존 차주에게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2023년 2월에는 금리인하 요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⁸⁾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 여부 심사시 승인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실시하였음.

○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자율적으로 반기마다(연 2회 이상) 기존 차주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정기 안내하고 있으며,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는 수시 안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⁹⁾.

□ 개정안과 같이 기존 차주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기 안내를 법률에

8) 금융기관이 주기적으로 차주의 신용등급 변동을 점검하였을 때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등

9) [은행권 금리인하 요구제도 현황]

대상차주	안내횟수(연간)	시행근거
전 차주	3회*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21. 11. 1.) -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신용도 개선 차주	2회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23. 2. 10.) -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를 개선하는 등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매 6개월 단위 2회: 구체적 안내 시기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음

금리인하 요구권 집중 홍보기간(매년 12월) 내 1회 : 집중 홍보기간(1주일) 동안 SMS 등을 통해 전 차주(수신 거부 차주 제외)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앱·ATM 등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 홍보

명시하고, 안내 주기를 분기로 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제도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지나치게 잦은 안내로 인해 차주가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내 주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⁰⁾.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잦은 안내로 인한 차주의 피로감을 고려하여 안내 주기를 현재 전 금융권에서 자율 시행 중인 사항과 동일하게 “매 분기”에서 “매 반기”로 수정하고, 차주가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기존 차주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기 안내 의무를 법제화하되, 안내 주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현재 지속적인 안내·홍보를 통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되어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정기적 안내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

10) 현재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는 신용공여 계약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중 채무자의 경우 잦은 안내로 인한 피로감이 더 클 수 있음.

성이 낮다는 의견과 잦은 안내는 고객의 피로도 증가 뿐 아니라 금리
인하 요구권 불수용에 대한 민원 증가를 과도하게 유발할 수 있고, 신
용점수 등은 단기간 내 신용도 개선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분기
별 안내보다는 현행과 같이 반기별 안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
함.

문 의 처
02)6788-5104